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송옥주 · 황명선 · 이원택
이병진 · 한민수 · 전용기
한정애 · 이수진 · 박해철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

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12조의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8제1호 중 “회원을 위한 물자의”를 “물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원을 위한 상품의”를 “상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회원의”를 “회원과 사업참여 농업인의”로, “증진을”을 “증진과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로 한다.

1의2. 농업인 대상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2조의8(사업) ----- ----- ----- -----.
1. <u>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u>	1. <u>물자의</u> ----- ----- -----
<u><신 설></u>	<u>1의2. 농업인 대상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업</u>
2. <u>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u>	2. <u>상품의</u> ----- -----
3. <u>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u>	5. ----- <u>회원</u> 과 <u>사업참여 농업인의</u> ----- <u>증진과 공동</u>

사업	<u>사업 운영재원 확보를</u> ----- -----
----	-----------------------------------